19 자동차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간내담관암

| 성별 | 남성 | 나이 | 59세 | 직종 | 자동차 공장 작업자 | 직업관련성 | 낮음 |
|----|----|----|-----|----|------------|-------|----|
|----|----|----|-----|----|------------|-------|----|

1 개요

근로자 ○○○은 1983년 8월 22일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년 9월 15일까지 약 32년 동안 스프레이 도장, 실러, 상도 T/UP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5년 7월 대학병원에서 담관암을 판정받고 사망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 의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3년 8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년 9월 15일까지 약 32년 동안 스프레이 도장, 실러, 상도 T/UP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스프레이 13년 8개월, 조립 및 실러도포 1년 9개월, 터치업 13년 1개월, 지원 3년 3개월, 휴직 2개월로 분류된다. 도장부서는 전처리반, 실러반, 개선반, 중도반, 상도반, OK수정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도, 상도, 리페어, 상도 터치업 파트는 각각 분리되어 있다. 1983년부터 1년 9개월간의 스프레이를 포함한 26년 9개월 동안 도장 1부에서 스프레이 업무와 상도T/UP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디클로로메탄과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MC)과 트리클로로에틸렌(삼염화에틸렌, TCE)의 주요 사용처는 도장전체를 완전히 수정해야 될 정도로 잘못된 경우 차체를 리페어파트로 이동시켜서 페인트박리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스프레이 업무나 상도 T/UP 수행 시에는 사용하는 빈도가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노출 농도 또한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03년 건강검진에서 만성C형 간염을 진단받았고, 2009년 간경변증을 진단 받아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주기적으로 가 상태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왔다. 가족 력으로는 부친이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의무기록과 일반 건강진단 자료에서는 음주는 주 2 잔 이내의 social drinking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흡연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속적인 피곤한 증상으로 대학병원 방문하여 CT 포함한 영상검사 시행하였고, 2015년 7월 2일 간내담관암을 진단받았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망 2015년 7월 2일 간내담관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83년 8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년 9월 15일까지 약 32년 동안 스프레이 도장. 실리. 상 도 T/UP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담관암의 위험요인으로는 1,2-디클로로프로판과 간흡 충증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디클로로메탄, B형 간염, C형 간염은 담관암 발생에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CE, DDT 등의 물질도 일부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증 거가 있다. 근로자는 디클로로메탄, TCE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근로자의 업무를 고려할 때, 노출 농도는 낮았을 것이며, 더욱이 간내담관암과 관련성이 있는 HCV 감염이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간내담관암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다. 끝.